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9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9월 12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의 합리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에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제한.
- 조령산 자연휴양림내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령산휴양림 입구에서 조령산삼관문 구간의 산책로를 단순 통과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면제 조항 신설.
- 자연휴양림내의 숲 속의 집 사용료 상향 조정.
- 시설물중 눈썰매장을 사계절썰매장으로 개칭하고 시설 사용료 상향조정.
- 휴양림내에 시설이 없는 숲 속의 집 9 ~ 14인용, 15인이상용, 테니스장, 강의실 사용료 삭제.

5. 검토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의 산림법 제 30조를 제33조로 개정하고, 제3조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내에 설치된 모든 자연휴양림을 충청북도에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으로, 그리고 조령산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령산 휴양림 입구에서 조령삼관문 구간의 산책로를 단순 통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숲 속의 집 사용료를 4인용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 ~ 8인용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사계절썰매장 사용료를 어린이는 2천에서 3천으로, 청소년·군인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단체 숙소 사용료는 8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 이며,

휴양림내에 시설이 없는 숲 속의 집 9 ~ 14인용, 15인이상용, 테니스장, 강의실의 사용료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에 제정하여 4년동안 시설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았으며, 조령삼관문의 입장료2중 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칙 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